

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0.

발 의 자 : 이용우 · 정준호 · 민병덕
김남근 · 김기표 · 박 정
김태선 · 신장식 · 박홍배
강득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석면 해체·제거 공사의 안전관리는 현장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민·작업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, 계획 수립 단계의 전문적 심의 체계와 시공 단계의 엄정한 감리가 함께 작동해야 함.

그러나 현행 법률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적·상시적 심의기구에 대한 명문 규정이 미비하고, 감리업무 역시 석면 잔재물 여부 확인 및 행정기관 보고에 관한 명시적 의무가 부족하여 현장 관리가 형식화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고, 석면의 설치·관리·해체·제거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는 ‘석면안전관리위원회’를 두도록 하며, 석면해체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사전 심의 - 현장 관리 - 사후 평가

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(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, 제30조의4제6항 신설).

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기본계획은 「환경보건법」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(이하 “환경보건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며, 그 밖에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환경보건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,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석면의 설치·관리·해체·제거 및 노후 석면 건축물 관리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한다.

제30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, 석면 잔재물 발생 여부, 제거계획 이행 상태 및 현장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및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요구 및 보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정기보고와 별도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) ① · ② (생략)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>	제5조(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기본계획은 「환경보건법」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(이하 “환경보건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며, 그 밖에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④ 환경보건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,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석면의 설치·관리·해체·제거 및 노후 석면 건축물 관리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한다.
제30조의4(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) ① ~ ⑤ (생략) <신설>	제30조의4(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, 석면 잔재물 발생 여부, 제거계획 이행 상태 및 현장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기후

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및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요구 및 보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정기보고와 별도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